

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8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27. 김향숙 의원 등 7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01. 03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01. 14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· 시행(안 제4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(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8호
 - 예고기간: 2024. 12. 27.(금) ~ 2025. 1. 2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함.

- (안 제3조) 책무

-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
- (안 제4조)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·시행

-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,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.

- (안 제5조) 스마트농업 육성사업

-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,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(안 제6조) 협력체계 구축

-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. 14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